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1)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3)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4)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 1)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3) 이 보험증권에 확보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정산하지 아니하며, 예치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 2)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①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9조 (계약전 알릴 의무)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③ 제11조 (계약의 해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① 피보험자가 제1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③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④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8조(보상한도)

- 1)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의 1내지 5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의 2의 비용, 3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과 4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9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계약후 알릴 의무)

- 1)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의 제2항에 따릅니다.
- 3)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 1)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9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후 알릴의무)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③ 상당한 이유없이 제23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 4)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을 때
 - ③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5) 위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무효)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4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아니합니다.

제15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②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③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보험증권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이상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3)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분담)

- 1)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대위권)

-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3조(조사)

- 1)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2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

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7조(약관의 해석)

-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1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p>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담보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p>다만,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p>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자동차	<p>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p> <p>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p>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p> <p>3) 무한계도를 주행하는 차량</p> <p>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p> <p>(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기, 천공기</p> <p>(2) 그레이더, 스크래퍼, 로울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p> <p>(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p> <p>(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p> <p>5) 위1) 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p> <p>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p> <p>(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용 장치</p> <p>(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p> <p>(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p>
<p>법률상의 배상책임</p>	<p>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p>
<p>공해물질</p>	<p>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p>
<p>테러</p>	<p>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p>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1 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 (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
- 10)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1)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3)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①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②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 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①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②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 명세 1	상호(성명): 구조 : 용도 및 면적: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기타 :
시설 명세 2	상호(성명): 구조 : 용도 및 면적: 시설면적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기타 :
시설 명세 3	상호(성명): 구조 : 용도 및 면적: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기타 :
시설 명세 4	상호(성명): 구조 : 용도 및 대수: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기타 :
업무 내용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1 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7) 사고일로부터 1 년후에 발생한 치료비
- 8)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②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9)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3)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4)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5)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 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6)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 3 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①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②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	--

1.2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금,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뚝,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내용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업무내용	업무명 : 관리자수 :
보상한도액	

운송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 3 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